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페이증권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도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명		•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e				
상품 주요 내용	투자대상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투자 전 펀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펀드는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하여 우수한 장기 성장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대기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AB SICAV I –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에 주로 투자합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의 주요위험인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환위험, 유동성 위험, 파생상품 위험, 주식위험, 국가위험, 집중 포트폴리오 위험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 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수수료 등 제반비용		• 판매 수수료: 없음 • 총 보수: 연 1.155% (운용 연 0.1%, 판매 연 0.99%, 수탁 연 0.04%, 일반사무관리 연 0.025%)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증권·부동산·특별 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서 펀드 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
		○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아래 내용은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펀드는 원금의 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Q2. 펀드를 가입할때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Q3. 펀드를 신규·매입·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펀드 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들면, 편입된 주식부분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이자, 채권매매 차익, 주식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펀드의 결산, 재투자자는 무엇인가요?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운용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기반으로 펀드의 위험등급 산정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 회사는 수익률의 변동성 또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6단계 투자위험등급에 따라 펀드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설정 3년미만 펀드)	VaR*기준 (설정 3년 이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 이하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 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험등급 변동관련 유의사항

- 공모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은 운용회사의 결정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최초 투자시점 이후에도 수시로 펀드의 투자 위험도를 확인하고, 투자 및 보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펀드의 투자위험등급 정보는 판매사 및 운용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 공시 사이트의 투자설명서(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성향별 투자적합 상품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이하 상품	3등급 (다소높은위험) 이하 상품	4등급 (보통위험) 이하 상품	5등급 (낮은위험) 이하 상품	6등급 (매우낮은위험) 상품

*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시가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수익률이 위험을 대변하지 못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산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 산정함.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예금자보 호	보호	이 예탁금 중 증권 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비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림	필수 사항	- 매매신청, 결제 안내: 카카오톡(알림톡) - 실질투자수익률 안내: App PUSH * 카카오톡(알림톡) 알림이 불가할 경우 App PUSH 또는 SMS발송 * App PUSH 알림이 불가할 경우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SMS 발송 - 수시공시/소규모해지 공시 안내: 이메일
	기타	- 펀드 관리 알림*: App PUSH, 카카오톡(알림톡) * 매매 펀드 및 약정 기반 주요내용 안내
서비스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약관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kakaopaysec.com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까지 통지하여 드립니다.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펀드 투자금 자동산정 서비스 * 동전 모으기: 카카오페이 결제 시 발생한 1천원 미만 잔돈(예: 1,200원 결제 시 800원이 잔돈)을 지정한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투자 * 자동투자: 투자 주기(예: 주, 월 등)와 매회 투자 금액을 설정하여 지정한 금융상품에 정기적으로 투자 - 연계·제휴서비스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당사: 고객의 조건설정 정보 제휴사 제공, 계산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금융상품에 투자 - 제휴사(카카오페이): 고객의 조건설정 정보에 따른 카카오페이증권의 요청에 따라 필요 정보 제공(결제 금액 등) - 연계·제휴서비스의 제공기간 - 당해 서비스 해지 시까지 - 연계·제휴서비스의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약관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공지사항에 게시.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까지 통지 - 연계·제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실명 확인된 계좌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본인 명의로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청약 철회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단위형 펀드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 동 펀드는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고객센터>소비자보호포털>공시/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자료열람청구)
자주묻는 질문	펀드 및 계좌, 출금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페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고객센터>FAQ / 카카오페이 앱>전체 > 카카오페이증권 > 펀드 > 투자 가이드)
금융사기 예방	- 금융사기, 아래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 -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 경찰서 (112) - 피해구제 신청: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 개인정보노출 등록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pd.fss.or.kr) ※ 금융사기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kakaopaysec.com) 또는 고객센터(1600-8515)로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해지	-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 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소규모펀드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5호

[심의일:2025.11.14]

의무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해지 관련 사항	•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1. 회사로부터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19926)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발행인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주식 위험, 파생상품 위험, 환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포트폴리오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발행인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AB SICAV I -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피투자펀드’)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자본성장을 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피투자펀드 운용자는 이 피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함에 있어 미국 대기업들에 집중합니다. 피투자펀드 운용자는 우량한 품질과 우수한 장기 성장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운용자가 판단하는 증권들로 구성되는 비교적 집중적이고 확신도가 높은 포트폴리오(주로 40~60개 회사들로 구성)를 구축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리서치를 사용합니다(상향식 접근법).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없음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연) 판매보수(연)	동종유형 총보수(연)	합성총보수 ·비용(연)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0.965%	0.80%	0.87%	1.713%	278	465	661	1,084	2,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1.665%	1.50%	1.21%	2.413%	253	492	713	1,140	2,409
	C2	1.415%	1.25%		2.163%					
	C3	1.164%	0.999%		1.912%					
	C4	0.965%	0.80%		1.71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565%	0.40%	0.58%	1.313%	187	331	483	808	1,7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155%	0.99%	0.75%	1.903%	200	410	630	1,104	2,5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없음	1.015%	0.85%	-	1.763%	185	380	584	1,023	2,32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P)	없음	0.565%	0.40%	-	1.313%	138	283	435	762	1,7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없음	0.865%	0.70%	-	1.613%	169	347	534	936	2,1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P2)	없음	0.515%	0.35%	-	1.263%	133	272	418	733	1,668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합성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보수·비용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피투자펀드에서 부과하는 총보수·비용은 약 연0.74%으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C1의 경우 전환에 따른 보수 변동사항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상기 종류 이외 종류 C-w, 종류 I, 종류 S, 종류 S-P, 종류 A-G, 종류 C-G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2025.12.31 기준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 투자자산은 이 투자신탁의 표시 통화인 원화 이외의 하나 이상의 이중 통화로 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투자자산의 통화 변동이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순자산가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재산에의 투자는 하나 이상의 이중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의하여 원화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표시 통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투자신탁 자산에 대하여 헤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지로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금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환헤지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목표 헤지비율은 80%~100%수준입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증권가격 변동, 환율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의 유형, 매도 제한,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매각이 어려운 경우, 보다 유동성이 높은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보다 중개 및 기타 거래 수수료 등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시장 상황, 특히 매수 의향이 있는 매수인 부족으로 인하여 펀드가 그 포지션 또는 보유물량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펀드가 더 낮은 가격을 수락해야 하거나 투자자산을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때때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을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며 포트폴리오 분산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의 방편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산정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관련 기초자산, 금리 또는 지수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숙련된 운용사가 신중하게 활용할 경우, 파생상품은 투자신탁의 운용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특정 위험을 경감하며, 기초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특정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지만,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에서 나타나는 위험과는 상이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주식위험	투자신탁의 기초 주식투자자산의 가치는 개별 투자대상회사의 활동과 성과에 따라, 또는 일반 시장과 경제상황,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때로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장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와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발행회사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는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 인플레이션율, 자본재투자, 자기자원 총분성 및 수지균형 면에서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회사는 내부자거래 규정, 시장조작 금지, 의결권대리행사 요건 및 적시 정보 공시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각 국가별로 발행회사에게 적용되는 보고, 회계 및 감사 기준이 중요한 면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증권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국유화, 강제 수용, 압류 조세, 통화 봉쇄, 정치적 격변, 정부 규제, 정치, 경제적 불안정, 외교상황 변화 등은 해당 국가의 경제나 동 국가에서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용, 국유화나 기타 압류로 인하여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투자자산의 전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성, 파산, 도산 등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상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중 포트폴리오 위험	투자신탁은 제한된 수의 발행인, 산업 또는 섹터 또는 국가에 투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욱 다양하고 넓은 증권 유형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포트폴리오가 투자하는 증권에 불균형적으로 매우 불리한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시장 변동과 불균형하게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발행인, 산업 또는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요인 또는 경제 요인은 포트폴리오 투자자산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6영업일 (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 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 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 ·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www.abfunds.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 회(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 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퇴 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한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 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 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 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해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절차 및 방법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 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 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 에 한합니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으로 합니다. ④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주) (☎ 02-3707-3400/ 홈페이지: www.abfunds.co.kr) (외화자산 관련 위탁운용사: AllianceBernstein Hong Kong Limited)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8월 4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bfunds.co.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 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 체감 (CDSC)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 (G)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I)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 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bfund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bfund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bfunds.co.kr)